의안번호	제 754 호
의 결	2017년 월 일
연월일	(제 회)

충청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발 의 자	연철흠 의원 등 7명
발의연월일	2017년 11월 21일

충청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(연철흠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54 발의연월일 : 2017년 11월 21일 발 의 자 : 연철흠, 최광옥, 박한범,

박봉순, 이언구, 김영주,

이숙애

1. 제정이유

O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등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O 도시재생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 (안 제2조)
- O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·조정하기 위한 전담조직,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(안 제3조~제4조)
- O 시·군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 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
나. 관련부서 협의 : 문화체육관광국 건축문화과와 협의함

다. 입법예고 : 2017. 11. 7 ~ 11. 17

충청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 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도시재생위원회) ①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도시재생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두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원회의 운영 등의 사항은 「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」에 따른다.
- 제3조(전담조직의 설치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·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.
 -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」로 정한다.
- 제4조(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)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 - 1.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지원
 - 2. 시ㆍ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와

조정

- 3. 시ㆍ군의 도시재생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, 컨설팅 등의 지원
- 4.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주관
- 5.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지원
- 6. 도시재생 관련 홍보
- 7.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 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
- 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도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⑤ 도지사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, 영 제15조 각호 및 이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- 제5조(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) 도지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·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.
 - 1.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
 - 2.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해당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
 - 3. 해당 시·군에 설치된 지방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
 - 4.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국가지원 사항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

- 5.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- 제6조(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) 도지사는 영 제31조에 따라 승 인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 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- 제7조(도시재생사업의 지원) 도지사는 시·군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 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8조(지원금액의 환수) 도지사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8 및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- 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 법령

□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·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경우,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 재생전략계획이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9조(전담조직의 설치)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·지원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 기관·부서 간 협의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·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. 도지사와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(이하 "구청장등"이라 한다)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.

-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- 1. 도시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지표의 조사·관리
- 2.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사업의 총괄·조정·관리·지원
- 3. 관계 기관,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교류
- 4. 지역 협업체제의 구축·운영
- 5. 도시재생 관련 국고보조금 등의 관리
- 6. 마을기업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추진
- 7.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사업 평가 및 점검
- 8. 재원 조달 및 관리
- 9. 그 밖에 도시재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그 밖에 전담조직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